

VI.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
가. 공유재산

(단위 : 천원)

용도별	전년도말 현재액	증 감 액		연도말 현재액
		증	감(△)	
합 계	10,170,790,110	4,017,253,380	△ 20,925,672	14,167,117,818
행정재산	9,817,076,755	4,015,860,705	△ 19,652,664	13,813,284,796
잡종재산	353,713,355	1,392,675	△ 1,273,008	353,833,022

나. 물품

(단위 : 천원)

품목별	전년도말 현재액	증 감 액		연도말 현재액
		증	감(△)	
전기기계 등 12종 (23,863점)	122,930,350	43,255,822 (15,051)	△ 6,922,028 (△ 1,060)	159,264,144 (37,854)

※( )는 수량임.

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 
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86
----------	-----

2001년 6월 일  
행정자치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"를 "서울특별시(이하"시"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교육청"으로 하고, 동조동항제5호 중 "제41조 및 제43조"를 "제34조 및 제36조"로, "교육장, 교육기관장"을 "교육기관장, 교육장"으로 하며, 동조동항제7호 중 "법 제137조 및 제138조"를 "법 제137조"로 하고, 동조 동항 제8호 중 "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"을 "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/4 이상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
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9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

- 가. 제안이유
  -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 -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1건당 20,000원으로 정함(안 별표).
  -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변경함(안 제6조제2호).